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2
----------	------

제출연월일 : 2015. 9. 1.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5.1.20. 공포, 2015.7.21.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 적용대상에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업 등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나.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구체화(안 제5조)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제출시기 구체화(안 제12조의2)

라.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대상 확대(안 제28조)

※ 기업지원과 - 10878(2015.03.23)호와 관련 규제개선정비대상조례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규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6. 예산수반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수당 : 4명 * 80,000원 * 5회=1,600,000원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 기간 : 2015년 8월 12일 ~ 8월 21 일(1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부서협의 기간 : 2015년 8월 12일 ~ 8월 19일(7일간)

나. 협의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사회복지과) : 원안 동의

9. 기타 참고사항 : 규제개선 정비대상 조례공문

10. 관련부서 : 경기도 회계과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하남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하남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 ③ 위원은 재산관리담당과장을 포함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총괄재산관리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⑨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⑩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⑪ 그 밖에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한다.

-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제1항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한다.

제2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8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가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비영리 연구기관·법인·단체·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 기업연구소 및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서명		회 계 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형분
	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신종민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유정수 (790-5143)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하남시</u>----- ----- ----- ----- -----.</p>
<p><u>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u></p> <p>① <u>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본청의 과장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u></p> <p>③ <u>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④ <u>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u>제4조(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u></p> <p>① <u>법 제16조에 따른 하남시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u></p> <p>③ <u>위원은 재산관리담당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u></p> <p>④ <u>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영 제7조의2제1항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u></p>

현행	개정안
<p>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⑤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총괄재산관리부서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총괄재산관리부서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p>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p><신설></p>	<p>⑨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p>
<p><신설></p>	<p>⑩ 심의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신설></p>	<p>⑪ 그 밖에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의2를 준용한다.</p>
<p>제4조의2(심의회대행)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u>규정</u>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 3. (생략)</p>	<p>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u>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u>영 제7조제3항</u> -----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제 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u>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u>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 <u>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u>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p> <p>① ~ ⑤ (생략)</p> <p>⑥ <u>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u></p>	<p>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p> <p>① ~ ⑤ (생략)</p> <p>⑥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28조(대부료의 요율)</p> <p>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시가 「<u>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u>」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비영리 연구기관·법인·단체·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연구소 및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p>

〈 관계법령 발췌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5.1.2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채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 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